

현행	개정 후
<p>투자자문계약서 세부계약조건</p> <p><b>4. 투자자문계좌</b></p> <p>가. 증권사 :</p> <p>나. 계좌번호 :</p> <p>다. 계좌명 :</p> <p><b>5. 투자자문자산 : 자문계좌에 고객이 입출금한 금액의 합계</b></p> <p>가. 자문계좌의 자산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합니다.</p> <p>나. 계약갱신 시의 투자자문자산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의 투자자문자산 평가금액으로 합니다. 단, 투자자문에서 성과수수료와 기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</p>	<p><b>4. 투자자문계좌 : 해당없음</b></p> <p><b>5. 투자자문자산 : 해당없음</b></p>